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9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구자인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579,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1. 26. 유족으로 자녀들인 E, F, 원고들, G, H 6인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는 G의 배우자였다가 2022. 9. 29.경 이혼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8. 5.경 경기도 이천시 I 토지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G와 피고에게 1/2지분씩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2022. 9.경 위 다가구주택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18. 5. 30.경 경기도 이천시 J 토지 및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K과 L에게 6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6. 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은 이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78,260,660원을 납부하였다. 라. K과 L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망인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마. 망인은 2018. 6. 14. 공증인 M 사무소 증서2018년 제00375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비롯한 모든 예금채권을 G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망인이 사망한 후 2018. 11. 30.경 G은 F, 원고들, H 4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리면서 각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F, 원고들, H은 2019.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협의서

2018. 11. 26. N요양병원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O은 다음과 같이 그 상속재산을 분할 합의한다.

다 음

상속내용 : 예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이상 O의 소유로 하기에 이천시 P에서 2018. 11. 30. 상속분,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원, 양도소득세 납부액

78,260,660원을 공제한 481,739,340원은 상속재산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6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누면 1인당 80,289,890원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와 G은 원고들에게 25,000,000원씩만 지급하였으므로 덜 지급한 55,289,89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55,289,8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침해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계좌에 매각대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던 중 예금채권 전액을 G에게 유증하였고, G은 망인의 사망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일부 금액을 F, 원고들, H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G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